

보도시점 2023. 5. 22.(월) 행사시작(14:00) 이후 배포 2023. 5. 22.(월) 08:00

##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 발표

- 해외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 구현
- 출입국자·운송수단·화물 검역을 통한 질병 유입 차단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해외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23~’27)」을 검역전문위원회(5.15.)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검역법(제4조의2)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

검역은 최일선에서 해외로부터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예방하여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공중보건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검역정책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중국발 변이 대응(‘23.1.) 등 검역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 < 검역정책 관련 국제기구 주요동향 >

WHO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정을 반영하여 공중보건대응, 모니터링 역량, 협력체계 등 IHR 개정 추진(‘23.4.~)
ICAO	공중보건위기 상시 대비체계를 구축하여 항공업계의 회복탄력성 확보를 위한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개정(‘22.11.)
WTO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 위생검역 현대화를 위한 각료선언 채택(‘22.6.)

- \*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
-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국제무역기구

이에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 구현”을 미션으로 하여 4대 추진전략과 15개 세부전략으로 구성된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23~’27)」을 수립하였다.

## <전략1> 참여·소통 기반 넥스트 팬데믹 대응체계 구축

먼저, 해외발생현황, 유입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검역감염병을 현행 11개에서 향후 20여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 기존 메르스, 에볼라 등 11종 검역감염병에 더하여 뎅기열, 홍역 등 10여개 감염병 단계적 확대

검역 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등의 안정적인 관찰을 위하여 격리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시운영인력을 확보한다.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입국 당시 잠복기에 있어 걸러내지 못한 감염병에 대한 간접지표를 확보함으로써 미래 감염병 대비 검역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활용하였던 검사, 격리 등 개별 검역조치\*별 효과성을 평가하여 미래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제도 정비 및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 입국 전·후 검사, 입국 시 격리 등 검역조치 정비

또한, 관계부처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제도화하여 위험도 평가, 방역조치 등을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셋째, 온라인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구축(‘25)하고, 오프라인 해외감염병 신고센터를 개선하여 신고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외감염병NOW, 여행자 대상 검역 챗봇(‘23년말) 등을 통해 해외감염병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

넷째,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항만까지 확대하고, C.I.Q 국경관리기관간 MOU 체결 등을 통해 정보시스템 협업을 강화하여 출입국자 편의성을 제고한다.

’23년 하반기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평가한 후 ’24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검역인력 운용을 효율화하며

\* 발열카메라 및 QR스캐너 활용하여 입국자가 Q-CODE 스캔 시 자동으로 증상 확인 후 개폐되는 장치 구현 검토

동시에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자체 (의사)환자 관리 지원 등 검역과 지역사회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 <전략2> 운송수단·화물검역을 통한 질병으로부터 건강한 사회 지원

먼저, ICAO 부속서\*를 반영하여 항공기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를 고도화하고, 기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고-응급조치 체계를 구축하며,

\* ICAO는 공중보건위기 상시 대비체계를 구축하여 항공업계의 회복탄력성 확보를 위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개정('22.11.)

해외 확진자 발생 시 귀국 등 지원을 제도화하고, 해외로부터 출입국이 이뤄지는 공항만 공중보건위기 대응등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둘째, 해외정책을 분석하여 선박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 조사항목·방식 등을 개선하고, 선박 내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절차를 마련하며, 동시에 상시 육로 검역 체계의 기반을 조성한다.

셋째, 오염이 발생한 운송수단 소독기준·절차를 정비하고, 운송수단 소독업체 등록·관리를 통해 출입국자, 운송수단에 안전성을 확보한다.

넷째, CPTPP\*의 가입에 선제적인 준비를 위해 화물검역 요건과 절차 및 화물 내 인체위해요인에 관한 평가기법 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철저한 질병 발생 요인 관리 기반을 검토한다.

\*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해외 위생검역 확대 추세를 고려하여 수출물품 증명서 유형·항목을 확대하여 실효성을 제고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출입 화물 위생검역을 수행한다.

## <전략3> 추진체계 확충을 통한 검역 역량 강화

먼저, 검역업무의 세분화를 고려하여 검역관 교육을 개편하고, 외국어 등 교육 과목을 내실있게 구성하여 검역관 교육 전문성을 강화한다.

공항만 해외감염병 대비 훈련계획을 마련하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훈련을 정례화함으로써 역량을 증진한다.

둘째,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출입국자 대상 해외감염병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검역통계를 진단하고 보완함으로써 근거기반행정을 달성한다.

셋째, 국내외적 요구 대응을 위한 정책 조직 확대를 통해 정책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검역소 조직진단을 함으로써 인적·물적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 <전략4> 대내·외 협력을 통한 검역 기반 마련

먼저, 검역법 내 국제협력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공중보건위기 상황을 대비하여 출입국자·운송수단에 관한 검역 협력을 강화하고, 화물 위생검역 협력 기반을 조성한다.

둘째,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 대비를 위한 상호협력 기반 긴급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CIQ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정비한다.

셋째, 운송수단·화물검역 검사 기술 등에 대한 R&D를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검역산업을 발전시켜나간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해외 질병의 유입·확산 차단을 통해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해나가기 위한 정책을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히면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제적 검역 규범을 선도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붙임> 1. 검역관리기본계획 요약본  
2. 검역관리기본계획 로드맵(포스터)  
3. 검역관리기본계획 카드뉴스

담당 부서	감염병위기대응국	책임자	과 장	박종하 (043-719-9200)
	검역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진욱 (043-719-9218)

2023 ~ 2027

# 제1차 검역관리 기본계획

- 요약 -

2023년 5월



질병관리청

□ 수립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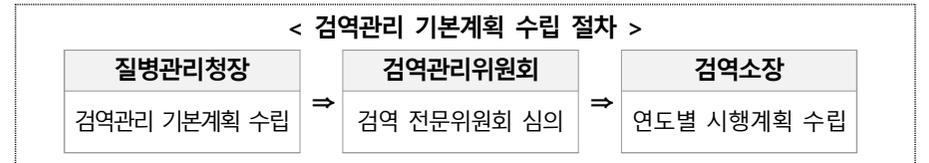
- 해외로부터 질병 유입 관리를 통해 선제적 상시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검역관리로 국민건강 및 사회적·경제적 피해 최소화

□ 수립 근거

- (근거) 「검역법」에 따른 법정계획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검역법 제4조의2제①항)

- (절차)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
  - 향후 5년간 검역정책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사업의 현황 및 실태, 관계기관 간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정책추진 전략과 세부 과제를 발굴·제시



□ 추진 경과

- 검역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20.8월~'21.1월)
  - \* 코로나19 4차 대유행('21.7월), 오미크론 신종변이 출현('21.11월) 등으로 검역대응에 역량집중
- '22년도 상반기 검역전문위원회, 검역관리기본계획 초안 심의 ("22.6월)
- 검역관리 기본계획(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23.5월)
- 검역관리 기본계획(안) 검역전문위원회 최종 심의 및 수립 ("23.5월)

## II 해외 검역 정책 동향

### 1 주요국가 검역 정책 동향

	국내외 감염병 상황에 따른 유연한 입국 검역을 수행하고, 운송수단·화물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검역 수행
	강력한 운송수단·화물 검역을 기반으로 출입국자 검역을 보완
	「검역법」 등 체계적인 법규정에 따라 근거 기반 검역 업무 수행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유입 예방을 위해 일정 수준의 입국 조건을 요구중
	검역을 통해 병원체·질병·오염물질 등의 유입을 포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가의 보건안보 사수

### 2 국제기구 검역정책 동향

#### WHO

- 전세계적인 감염병 팬데믹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위기 대비 및 회복력 이니셔티브(PRET)\*’ 개시(‘23.4.26.)
  - \* 공통적인 특성을 지닌 병원체들을 모듈화(clustreing)하여 병원체군(pathogen group)별로 팬데믹 대응 개선 집중
-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정에서의 교훈을 반영하여** 공중보건대응, 모니터링 역량, 협력체계 등 IHR 개정 추진(‘23.4.)

#### ICAO

- **공중보건위기 상시 대비체계를 구축하여 항공업계의 회복탄력성 확보**를 위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개정(‘22.4.개정안 제출, ‘22.11.18. 발효)
  - 항공기 보건위생관리, 감염병 발생 대비 항공계획 등 국가별 이행 과제 16개 제시
  - \* 부속서 개정 사항을 1년 내 반영하도록 각국에 의무 부여

#### WTO

-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 **위생검역(SPS) 현대화**를 위한 **각료선언 채택**(‘22.6.)
  - \* 미국, EU, 스위스, 중국, 일본, 한국 등 45개 국가와 그룹이 SPS 현대화 필요성 제기
  - \* ①SPS 조치의 사용이 과학적 근거와 원칙에 기반, ②식품, 동물·식물, 상품의 안전한 무역 강화, ③국제규범기구 등과의 협력 강화 등 포함

## III 환경분석 및 시사점

<b>사회적 분석 (S)</b> <b>기술적 분석 (T)</b> <b>경제적 분석 (E)</b> <b>환경적 분석 (E)</b> <b>법·정책적 분석 (P)</b>	→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에 따라 질병에 취약해지고 있으며, 국민들은 신종 바이러스 유행에 대한 불안감 상승
	→ 발전하는 진단검사기술, 정보통신기술 등을 연계하여 과학적 기반의 검역 기법 개발 필요
	→ 질병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 화물 검역을 수행
	→ 기후위기, 미세먼지 등으로 질병 위험도가 높아지며, 감염병 주기가 짧아져 질병 유입 환경·요인 관리 필요
	→ 화물검역 등을 통해 <b>Front-Line에서의 국제공조 활성화</b> 에 기여하고, 검역정책 전반에서의 <b>국제협력 강화</b>

## IV 국내 검역 정책 환경

### 1 코로나19 검역 추진 체계

- ①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별 위험도 평가, 검토, 심의 등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적시 수립·시행
- ② (특별입국절차 운영) 관할 지자체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입국자의 연락처·주소 확인, 모니터링앱(자가격리앱·자가진단앱) 설치
- ③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 코로나19 유입·확산의 예방을 위하여 입국 금지, 입국 전후 검사, 입국 후 격리, 운송수단(항공편·선박) 제한 등의 조치 수행
- ④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웹을 통해 입력된 입국자 검역 정보의 신속한 처리·관리·연계 가능한 전자시스템 도입(Q-CODE)

### ⑤ 출입국자 편의성 확보

- (기업인 신속통로) 단기 해외출장 기업인을 대상으로 격리 기간 없이 경제 활동을 허용하는 신속통로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경제적 피해 최소화
  - \* 중국, 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대상으로 신속통로 운용('20년)
- (격리면제서 발급) 코로나19 유입 최소화를 위해 입국자 격리를 해온 바, 긴급·불가피한 입국 목적 달성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격리를 면제('20.8.~)
- (긴급 교민 이송 지원) 코로나19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부터 교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교민 이송 지원 실시
  - \* 이란('20.3.), 이탈리아, 스페인('20.4.), 러시아('22.3.) 등 교민 이송 지원

## 2 코로나19 검역 대응 평가

### ① 추진 체계 평가

- (특별입국절차 운영) 코로나19 초기 대응 시 신속하게 도입하여 입국 후 검사·격리 등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기여
-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 코로나19 전 과정에서 범부처 합동으로 신속한 심의·조정을 통해 탄력적 방역 조치 수립에 기여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코로나19 대응으로 복잡해진 검역조사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검역 시간 단축 및 입국자 편의 증진에 기여

<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도입 효과 >

구 분		Q-CODE 본격 도입 ('22. 3. 21.)	법무부 행정응원 종료 ('22. 5. 18.)	모든 입국자 격리 의무 해제 ('22. 6. 8.)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 중단 ('22. 9. 3.)	입국 후 검사 중단 ('22. 10. 1.)
Q-CODE 이용자	격리대상자	45초	45초	-	-	-
	격리면제자			45초	30초	30초
Q-CODE 미이용자	격리대상자	2분	210초~270초	-	-	-
	격리면제자		180초	2분	1분 30초	45초

- (다부처 협력) 법무부, 외교부, 국토부 등 다부처가 협력을 통해 급격히 증가한 검역업무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

### ② 대응 조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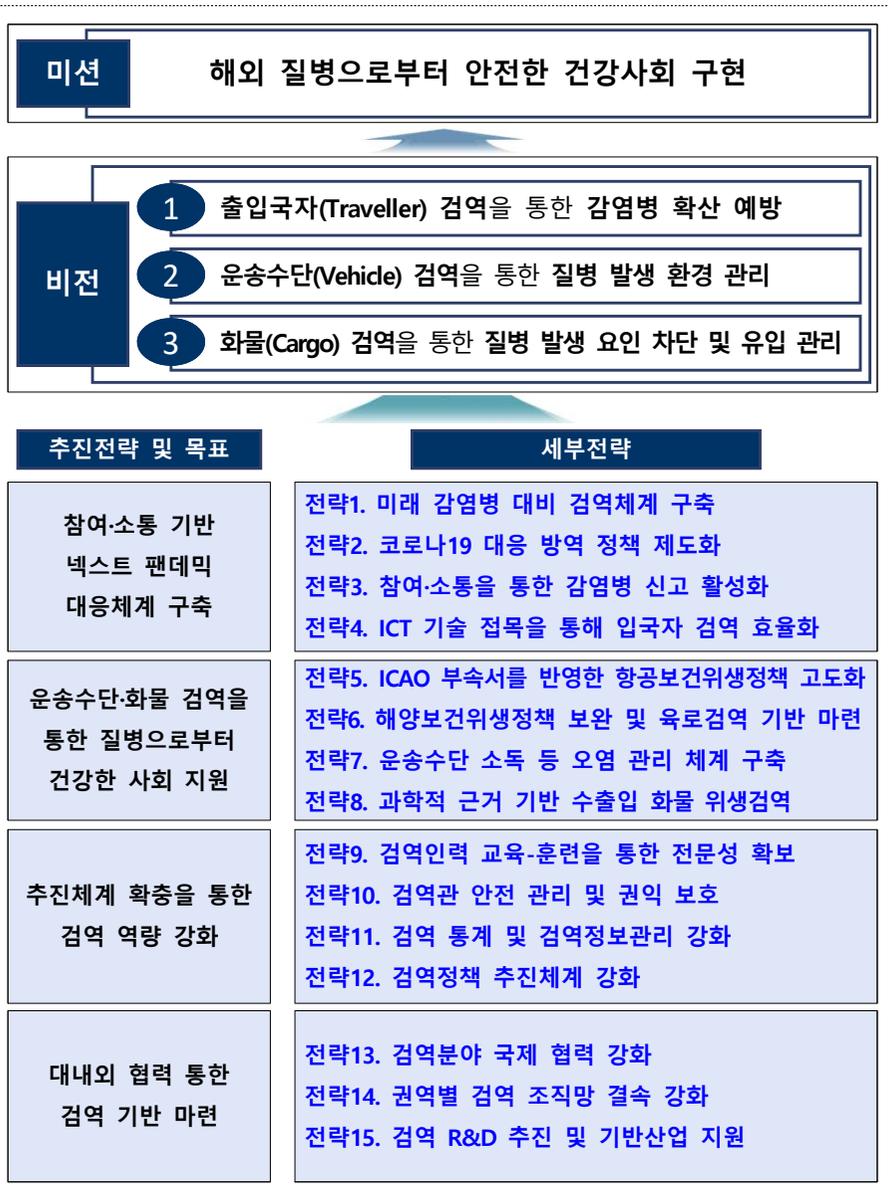
- (초기 대응) 중국발 입국자 제한 미실시 및 3T 정책에 의한 차단 노력
- (알파 대응) 국내 우세종화 방지 및 변이 확산 차단 효과
- (델타 대응) 주요 선진 7개국 대비 이환율, 사망률 모두 매우 양호하여 대응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
- (오미크론 대응) 주요 선진 6개국에 비해 한국은 우세종화를 늦추어 의료·방역 대응 준비를 위한 기간 확보
  - ※ 주요 선진 6개국은 '21년 12월 하순 우세화, 한국·독일은 1월 중순 우세화
- (중국발 대응) 중국발 선제적 검역조치(1.2.) 도입 이후 입국자 양성률이 대폭 감소함으로써 지역사회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

## 3 검역 대응 현황 분석

- (출입국자)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일상회복에 따라 연도별 입국자 수가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검역대상 입국자 급격히 증가 예상
  - ※ 일평균 입국자 수: ('19년) 141,824 → ('21년) 9,486 → ('23년) 79,391
- (운송수단) 코로나19 유입·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19년 이후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대상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22년 이후 반등 추세
  - ※ 일평균 입국 운송수단 수: ('19년) 920 → ('21년) 361 → ('23년) 646
- (화물) 국내 검역소는 매년 수입화물(고철이나 수입폐선, 기타 화물 등)에 대한 소독 등 보건위생상태관리 수행

☞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출입국자·운송수단 정상화로 인한 검역대상 증가, 국제적 요구 수준에 맞춘 운송수단 위생관리 및 화물 위생검역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검역정책 적용이 필요

## V 비전 및 목표



## VI 추진전략

### 1 참여·소통 기반 넥스트 팬데믹 대응체계 구축



#### 1-1 미래 감염병 대비 검역체계 구축

- (검역감염병 확대) 해외발생현황, 유입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검역 감염병 수를 단계적 확대
  - ※ (현재) 메르스, 에볼라, 동물인플루엔자 등 11개 감염병 → (확대) 크리미안 콩고출혈열, 뎅기열, 홍역 등 10여개 감염병 단계적 확대
- (공항만 하수 감시체계 구축) 공항만 검역구역 내 하수검사를 통한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조기인지·신속대응
- (공항만 격리시설 확충) 공항만 격리시설(격리관찰실, 격리관찰시설)·운용 인력 확충을 통해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의사환자 등을 상시 안정적 관리

< 권역별 격리시설 현황 (23.1월말 기준) >

구분	합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김해공항	
		인천공항	인천	동해	평택	군산	목포	여수	제주	포항	울산	부산		마산
격리관찰시설	82	50	-	-	-	-	-	-	20	-	-	12	-	-
격리관찰시설	검역소	22	-	-	-	2	2	1	3	1	1	2	2	6
	공항만	41	1	4	6	5	1	6	-	8	2	-	7	-

※ 공항만 내 검역소 격리관찰실(시설)이 없는 여수, 울산 등 6개소 우선 설치 상시 운영 위한 인력: (인천공항) 9명, (부산) 3명, (제주) 3명 등 확보 추진

## 1-2 코로나19 방역 정책 제도화

- (코로나19 조치 심층 진단) 코로나19 대응 개별 검역 조치(입국 전 검사, 격리 등)별 수학적 모델링을 통한 효과성 평가 수행
  - \* 입국 단계 시 적용 가능한 조치별 감염유입 감소 및 전파 차단 효과 평가
-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국가별 위험도 평가에 따른 조치 협의를 위해 감염병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제도화

### < 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 개요 >

- (구성) 방대본 주관 하에 국조실, 법무부, 국토부, 외교부, 고용부, 해수부, 문체부, 교육부, 산업부, 복지부, 질병청, 행안부 등 14개 부처
- (주요 내용) 국가별 위험도 평가, 해외입국자 방역조치(검사·격리·사증제한 등) 등

- (검역관리지역)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되, 위기 시에는 검역관리지역(일반국가), 중점검역관리지역(주의국가)로 세분화하여 관리

### < 코로나19 대응 검역 조치 참고 예시 >

- (일반국가(Lev.1.)) 부정기편 운항 제한, 격리 및 검사 등
- (주의국가(Lev.2.)) 항공편 제한(정기편/부정기편 운항제한, 좌석점유율 제한 등), 사증발급 제한, 격리 및 검사, Q-CODE 의무화 등

### < 평시/위기시 검역정책 운용방안 >

구분	평 시	위 기 시
중심 회의체	• 검역전문위원회(분기) ※필요시 수시 개최	•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주1회~월1회)
위험도 평가	• 검역관리지역 지정	• 검역관리지역(일반국가) • 중점검역관리지역(주의국가)
방역조치	• 입국자 증상 확인 및 증상 여부에 따른 조치 •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등	• (검역관리지역) 증상확인, 입국 전·후 검사, 입국후 격리, 예방접종증명서 징구 등 • (중점검역관리지역) 상기 조치 일체 + Q-CODE 의무화, 지자체 입국자 전수 관리 등

\*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운영규정 제정

※ 평시에도 연1회 또는 필요시 관련 방역조치, 교류 활성화 등 협의 위해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운영

## 1-3 참여·소통을 통한 감염병 신고 활성화

- (해외감염병신고센터 내실화) 온라인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구축하고, 공항에 구축된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접근성 강화를 통해 신고 활성화
  - \* 온라인 해외감염병신고센터 병행하여 유증상자에게 방역수칙 등 정보 제공
- (해외감염병NOW 정보 제공 강화) 최신 해외감염병 유행 정보 다국어 제공, 국가별 출입국조치 등 이용자 친화적인 콘텐츠 개발을 통한 홈페이지 활성화
  - \* 장기적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과 같이 여행자 건강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

### [ 주요 해외 유사 사례 ]

- (미국) CDC, Travel's Health Notice 운영(감염병 외 벌레 등)
- (캐나다) 보건부, Travel Health notices 운영(감염병 외 기후 등 국가별 건강위험)
- (영국) NaTHNaC, Travel Health PR 운영(감염병, 공기 질 등 건강위험)

- (여행자 대상 챗봇) 관세청 등 출입국 관련 유관기관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국민미서 챗봇 상담서비스를 통합 구축하여 24시간 검역 관련 민원 상담 제공
- (해외감염병 대국민 소통) SNS 또는 공항에서의 소통 활동을 통해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등 인지도를 제고하고 국민들의 실천력 향상

## 1-4 ICT 기술 접목을 통해 입국자 검역 효율화

- (Q-CODE 활성화) 시스템 연계,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활성화함으로써 신속한 검역 달성
  - \* C.I.Q 국경관리기관간 MOU 체결을 통해 정보시스템 등 협업 강화
- (자동검역심사대 도입) 자동검역심사대 단계적 도입을 통한 검역인력 운용 효율화('23. 하반기: 1개소 시범사업 → '24년 효과성 평가 후 단계적 확대)
  - \* 발열카메라 및 QR스캐너를 활용하여 입국자가 QR코드 스캔 시 자동으로 증상 확인 후 해제되는 알고리즘 구현
- (검역-지역사회 연계) ①지자체 통보를 통한 (의사)환자 관리 지원, ②DUR-ITS 시스템 내 팝업 방식 개선 등 지역사회 연계 강화

## 2 운송수단·화물검역을 통한 질병으로부터 건강한 사회 지원

### 2-1 ICAO 부속서를 반영한 항공보건위생정책 고도화

- (항공기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 입항 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생조사항목을 설정하여 질병 발생 예방
  - \* (기존) 보건상태 신고서 제출 → (개선) 입항 전 신고 의무화, 위생조사
- (해외 확진자 귀국 지원) 내국인 해외 확진자(또는 환자)의 귀국 지원을 위한 기준·절차 마련
- (기내 감염병 환자 신고-응급조치 체계 마련) 기내 감염병 환자 발생 즉시 항공사 신고를 통해 적시 대응 실현
- (공항·만 공중보건위기 대응등급 평가) 공·항만 보건대응역량 확보를 위한 정기적 보건대응등급 평가 추진
  - \* (지표(안)) WHO 평가사례(17, WHO-질병관리본부 합동평가)를 벤치마킹하여 예방·조기 탐지·신속대응 및 기타(위기소통, 자원확보,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를 평가

### 2-2 해양보건위생정책 보완 및 육로검역 기반 마련

- (선박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 국제표준 및 해외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조사항목과 조사방식을 개선하여 선박보건위생조사 효과성 확보

현 행		→	개 선 안	
조사항목	위생상태, 위생물품 구비 유무 등		위생상태, 위생물품 구비 유무 등	
조사방식	관능검사 위주	장비를 활용한 물리적·화학적 조사 검체채취(병원체), 관능검사 등 병행		
조사기준	선박위생관리 점검표	선박위생관리 점검표 외 조사항목 별 SOP 마련		

- (선박 내 응급환자 대응절차) 응급환자(감염병 유증상자 등) 발생 대응을 위한 선내(운항중·기항·이송) 대응절차 마련
  - \* 선박 유형(어선, 화물선, 여객선 등)에 따라 필수 응급장비 기준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조치 등 포함
- (상시 육로 검역 체계 기반) 상시 정보공유 체계 및 검역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육로 검역 대비 태세 구축

## 2-3 운송수단 소독 등 오염 관리 체계 구축

- (오염 운송수단 소독) 운송수단 내 오염 발생 시 소독명령부터 소독 수행까지 명확하고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
  - \* 국제기준에 맞추어 오염을 유형화하여 맞춤형 소독 운용 추진
- (운송수단 소독업체 등록·관리) 관할지역 내 운송수단 소독 가능 업체를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소독방법·기준 등 충족 여부를 지속 점검·관리

## 2-4 과학적 근거 기반 수출입 화물 위생검역

- (화물검역 정비) CPTPP 협정문을 반영하여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화물검역 요건·절차 등 전과정 진단 및 정비 추진
- (화물 내 독성물질·요인 평가) 화물 내에 포함되어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전반에 대한 연구
  - \* 화물별 사용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검역 단계에서의 독성물질·요인 실태 및 현황 조사 및 독성물질·요인 기준 검토
- (화물검역 인프라) ①운송수단, 화물 위주 화물위생검역시스템, ②실험 장비 등 단계적 구축 추진
- (화물 수출증명서) 해외 위생검역 확대 추세를 고려하여 검역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 유형 및 검사항목 확대 추진 검토

현 행		→	개 선 안	
유형	- 물품 소독증명서 - 운송수단별 소독증명서 - 병원체 검사증명서		- 물품 소독증명서 - 운송수단별 소독증명서 - 검사증명서 - 물품명세 확인서	
검사항목	검역감염병 병원체	병원체, 중금속, 환경호르몬, 화학물질 물품명세 확인 등		

- (화물검역 정보 관리) 국가별 수출 비중\*을 고려하여 해외 화물 위생 검역(SPS-TBT) 정책을 파악하고 기업 등에 정보 제공 등 준비
  - \*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화물 위생검역 조치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누리집 또는 정보제공 안내집(책자) 등 효과성 검토 후 '25~'27년도 본격 추진

### 3 추진체계 확충을 통한 검역 역량 강화

#### 3-1 검역인력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확보

- (검역업무 정상화) 검역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검역관 대상 교육과정 지속 확대 개편(기수, 과정수, 인원 등) 추진
- (검역관 교육효과 향상) △평가지표 반영, △검역소 교육 훈련(가칭) 신설 및 △교육담당기관과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교육 효과 제고
- (검역관 전문성 강화) 역학조사, 외국어 등을 반영하고,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전문성 강화

\* 검역관 교육과정을 필수과정과 세부업무전문과정으로 구분·운영

- (검역관 안전 관리) 민원 대응 매뉴얼 마련 등 검역 인력의 안전 확보

#### 3-2 검역통계 및 검역정보관리 강화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검역 및 감염병 시스템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합·구축(24년), 시스템 기반 검역소지역사회 간 검역 조사정보\* 전송 기능 구현
- (검역통계 진단) 검역통계의 시의성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신규 통계 발굴 및 적시 원인 분석을 통해 정책의 시차 최소화

#### 3-3 검역정책 추진체계 강화

- (정책 조직 강화) 조직 외연 확대를 통해 각 분야별(사람·선박·항공기·화물)로 전문화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적시성 있는 해외질병 검역정책 수립

\* 장기적으로 대상별 또는 기능별 검역정책국 신설 추진

- (검역소 조직·인력) 정기적인 국립검역소 조직진단을 통한 기능, 역할 등에 대한 정밀 분석 후 맞춤형 직제 신설 및 검역관 증원 추진
- (검역민간 보조인력) 지역우대 청년 채용 추진으로 충직한 검역업무 수행에 기여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검역 전용 운송수단) 검역선, 검역 항공기(에어 앰블런스) 등 운송수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보건안보를 지키는 검역업무 사각지대 해소

\* 외항 정박 선박에 대한 검역업무 수행을 위한 검역선 재도입 추진

### 4 대내·외 협력을 통한 검역 기반 마련

#### 4-1 검역분야 국제 협력 강화

- (근거 정비) 국제협력 정당성 확보를 위해 검역법상 국제협력 조항 마련
- (출입국 검역협력) 감염병 상황에서 국가간 원활한 이동성 확보를 위한 (행사)국제적 협력 근거 마련 및 (행사·위기 시)협력 강화
- (위생검역협력) 각 국가 화물검역 기관과 MOU 체결을 통해 연락체계 형성 및 정보 공유
- (주한미군) 미 SOFA 협정상 구체적 규정이 없는 출입국검역(주한미군 및 가족, 위생검역(화물) 관련 내용 양해각서(MOU)를 통해 협력 체계 구축

#### 4-2 권역별 검역 조직망 결속 강화

- (협조 강화)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 대비를 위한 검역소·질병대응센터 상호협력 기반 긴급 대응체계 확립
- (입국자 협력체계) 사람과 화물 등 출입국에 필요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항·항만 3대 기관(CIQ) 간 상설회의체 구성·운영 재개
- (관계부처 협력체계)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공항만 대응체계 강화

#### 4-3 검역 R&D 추진 및 기반산업 지원

- (해양·항공 운송수단) 선박·항공기 내 활용가능한 검역 진단·위생관리 장비 등 해양·항공 운송수단 보건위생관리 연구 지원
  - ※ 운송수단 환기를 통한 공기의 질 관리를 위한 필터, 표면 위생 관리를 위한 코팅 연구 지원 등 검토
- (화물 시험검사 지원) 화물 검사역량(항목 등)의 지속적 확대 추진
  - ※ 민간에 검사역량 교육을 통해 국내 위생검역 시험검사 산업 발전 기여

2023. 05. 22. 질병관리청

## 제차 검역관리 기본계획 로드맵

해외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검역관리로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추진목표**



**Traveller**  
출입국자 검역을 통한  
감염병 확산 예방



**Vehicle**  
운송수단 검역을 통한  
질병 발생 환경 관리



**Cargo**  
화물 검역을 통한  
질병 발생 요인 유입 관리

**추진전략**



참여·소통 기반 넥스트  
팬데믹 대응체계 구축



추진체계 확충을 통한  
검역 역량 강화



운송수단·화물 검역을 통한  
질병으로부터 건강한 사회 지원



대내외 협력을 통한  
검역 기반 마련

2022.05.22. 질병관리청

해외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차 검역관리  
기본계획**



1/8

2022.05.22. 질병관리청

### 제차 검역관리 기본계획이란?

해외 질병의 유입 관리를 통해  
상시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검역관리로  
국민건강과 사회·경제적 지원을 위한  
5개년('23~'27) 계획입니다.



**출입국자**  
출입국자 검역을 통한  
감염병 확산 예방



**운송수단**  
운송수단 검역을 통한  
질병 발생 환경 관리



**화물**  
화물 검역을 통한  
질병 발생 요인 유입 관리

2/8

2022.05.22. 질병관리청

### 추진 전략 01

#### 입국자 검역 체계 흐름도

**검역대** : 증상 감시·검역 신고  
(건강상태질문서 또는 Q-CODE)

↓

**해외감염병 신고센터** : 증상 자진 신고

↓

**지역사회** : 입국 후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①보건소 ②1339콜센터  
③온라인 해외감염병신고센터

↓

**의료기관** : 의사 환자 신고  
(수진자 해외여행력 제공, DUR-ITS)

3/8

2022.05.22. 질병관리청

### 추진 전략 01

#### 참여와 소통을 기반한 넥스트 팬데믹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미래 감염병 대비  
검역체계 구축



코로나19 대응 검역  
정책 제도화



참여·소통을 통한  
감염병 신고 활성화



ICT 기술을 통해  
입국자 검역 효율화

3/8

2022.05.22. 질병관리청

### 추진 전략 02

#### 운송수단·화물 검역을 통해 질병으로부터 건강한 사회를 지원하겠습니다



ICAO 부속서를 반영한  
항공 보건위생정책 고도화



해당보건위생정책 보완 및  
육로 검역 체계 기반 마련



운송수단 소독 등  
오염 관리 체계 구축



과학적 근거 기반의  
수출입 화물 위생검역 수행

5/8

2022.05.22. 질병관리청

### 추진 전략 03

#### 추진체계 확충을 통해 검역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검역관의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확보



검역관 안전 관리  
 및 건강 보호



검역 통계 및  
검역정보관리 강화



검역 정책 추진체계 강화

6/8

- 20 -

2022.05.22

추진 전략  
04

질병관리청

**대내외 협력을 통한  
검역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검역 분야  
국제협력 강화



권역별 검역 조치량  
일속 강화



검역 R&D 추진 및  
기반산업 지원



7/8

2022.05.22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미래 검역 비전과  
촉진한 검역 정책 실현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8/8